

#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ㄷ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년 11월 13일 부천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9년 11월 13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57회 부천시의회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(2009. 12. 17)  
상정 및 의결

## 2. 제안설명

(제안 설명자 : 하수과장 배덕기)

### □ 제안이유

- 재이용수 사용료고지 시 재이용수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, 체납시에는 하수도 사용료만 증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이용수 요금은 증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,
- 재이용수 사용료 체납시 재이용수 요금도 증가산금을 부과하여 하수도 사용료와의 형평에 맞게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□ 주요내용

가. 재이용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

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  
함. (안 제33조제2항)

### 3.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

○ 없 음

### 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 : 없 음

나. 반대토론 : 없 음

### 5. 심사결과

○ 원안의결

### 6. 소수의견의 요지

○ 없 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##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531호
의결년월일	2009. 12. 23. (제157회)

제출년월일 : 2009. 11. 16.

제 출 자 : 부 천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재이용수 사용료고지 시 재이용수 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함께 부과하고 있으나, 체납시에는 하수도 사용료만 증가산금이 부과되고 재이용수 요금은 증가산금이 부과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,
- 재이용수 사용료 체납시 재이용수 요금도 증가산금을 부과하여 하수도 사용료와의 형평에 맞게 정비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재이용수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함. (안 제33조제2항)

## 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천시 재이용수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3조 (가산금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는 고지카드로서 갈음할 수 있다.</p>	<p>제33조 (가산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에 대하여는 납부기일 후 3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증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</u></p>

## < 관계 법령발췌서 >

### □ 지방세법

**제27조 (가산금 및 독촉)** ①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. 다만, 국가와 지방자치단체(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)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5.12.31>  
② 체납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(이하 이 조에서 "증가산금"이라 한다)을 제1항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 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. <개정 1993.12.27>

### □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

**제11조(가산금과 납입독촉)**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·점용료·수수료 및 원인자부담금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가산금을 징수한다.  
1. 사용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때에 체납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제1항의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할 것